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9 - 19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2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사유

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근거 신설(안 제6장 제18조)

- 심의사항 : 구 조직운영정책 및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- 위 원 : 위원장(부구청장) 포함 10명 이내
- 위 원 회 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- 기 타 : 간사와 서기에 관한 규정, 수당 지급 근거 등

## 3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9조(조직관리 위원회의 설치 등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9. 2. 7. ~ 2. 14. (제출의견 없음)

2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제외법령

3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동의

4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6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(제18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6장 조직관리위원회

제18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구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직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중기기본인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구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계공무원
2.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망, 심신장애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
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,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인사팀장으로 한다.

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6장   조직관리위원회</u></p> <p><u>제18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구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직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2. 중기기본인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3. 구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4. 그 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</u></li> </ol> <p><u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관계공무원</u></li> <li><u>2.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li> </ol> <p><u>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</u></p>

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망, 심신장애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
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,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인사팀장으로 한다.

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
 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(참석위원 수당 지급 등) 경미함

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행정국 총무과 전보아
연 락 처	02-3153-8216